



# 태양광시장창출 계획

2009.09.28

# 목 차

I. 태양광시장창출 계획 개요

II. 태양광시장창출 계획 운영 규정

III. 향후 일정

# 1. 태양광시장창출 계획 개요



# 제2차 RPA협약과 태양광시장창출 계획

## ◆ 제2차 RPA 협약

- 협약기간 : 2009-2011
- 협약기관 : 한국전력공사, 한국수력원자력, 한국남동발전, 한국중부발전, 한국서부발전, 한국남부발전, 한국동서발전, 한국지역난방공사, 한국수자원공사 등 9개 기관
- 협약내용 : 총2조9천억원투자, 신재생설비 1,332MW보급

## ◆ 태양광시장창출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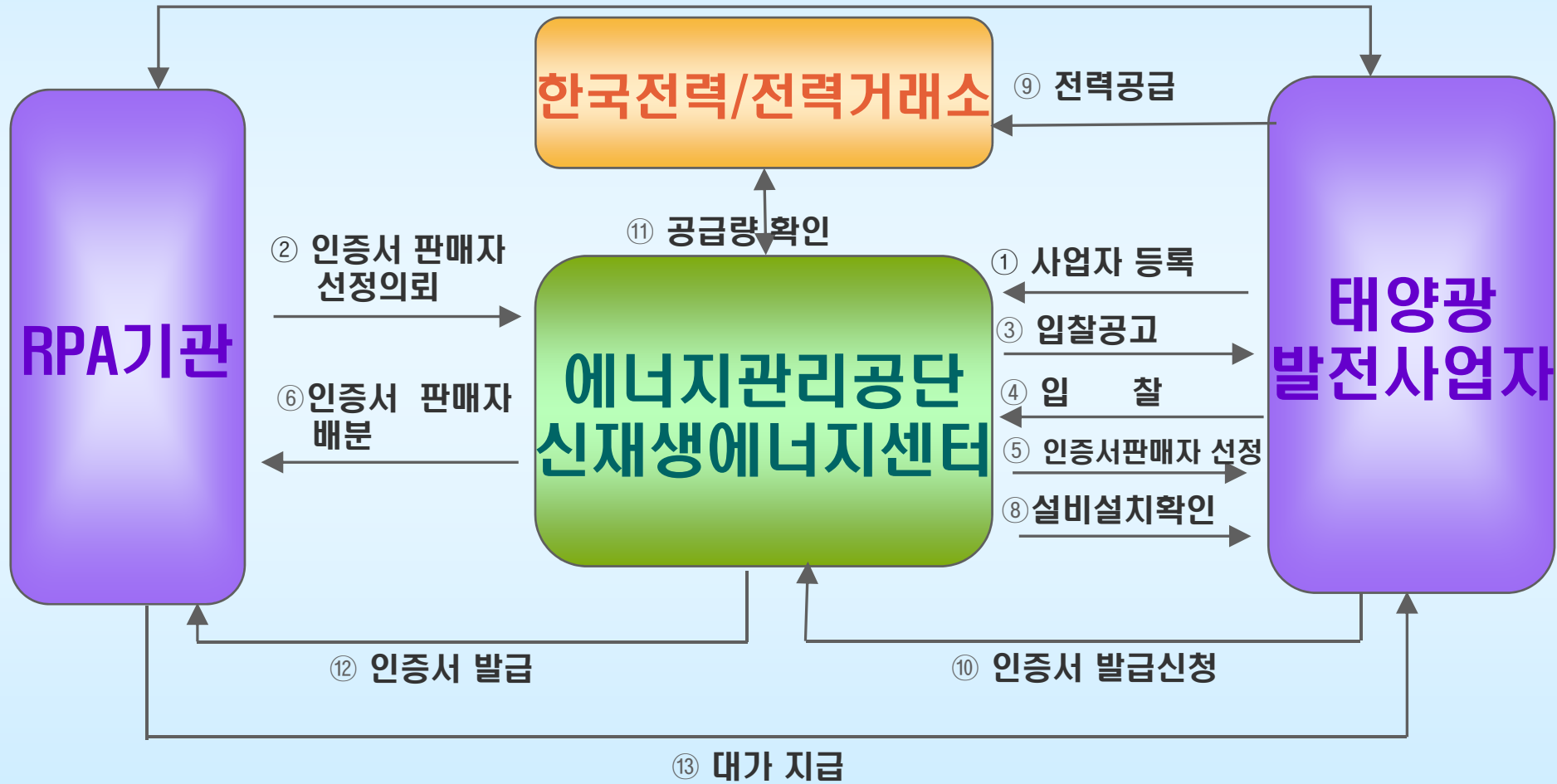
- 참여기관 : 한국수력원자력, 한국남동발전, 한국중부발전, 한국서부발전, 한국남부발전, 한국동서발전 등 6개 기관
- 협약내용 : 3년간 총3,382억원 투자, 태양광설비 101.3MW보급
- RPS시범사업 : 3년간 49.8MW의 설비를 외부구매를 통하여 조달

# 발전차액지원제도와 RPS시범사업

구 분	발전차액 지원제도	RPS 시범사업
보급용량 (‘09-’11)	<b>200MW</b> (‘09년 50MW, ‘10년 70MW, ‘11년 80MW)	<b>49.8MW</b> (‘09년 14.5MW, ‘10년 15.5MW, ‘11년 19.8MW) * 자체 건설 51.5MW 별도
수익원	전력거래대금+발전차액	전력거래대금+인증서판매수입
가격결정	-전력거래대금 : 전력시장에서 결정 -기준가격 : 지경부 장관이 고시	-전력거래대금 : 전력시장에서 결정 -인증서판매가격 : 입찰을 통하여 결정
적용기간	15년	12년
수입의 특징	고시한 기준가격으로 대체로 일정 수입=기준가격×발전량	SMP의 변동에 따라 매월 약간의 차이 발생 수입=SMP×발전량 + 인증서가격×발전량

# RPS 시범사업 업무 절차

⑦ 인증서 매매계약



※ 단, 전력거래소 회원사는 전력거래소에서 공급인증서발급

## II. 태양광시장창출 계획 운영 규정



# 운영규정이란?

## ◆ 운영규정

- 명 칭 : “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발급 및 매매에 관한 규정”
- 역 할
  - 제2차 RPA 협약에 의한 태양광시장창출 계획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규정으로서
  - 2012년 RPS 시행전까지의 시범사업 절차를 규정
- 경 과 : RPA 협약 이후 태양광제조업체, RPA협약기관, 금융기관과의 수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수립
- 시 행 : 2009.10.01 예정



# 1. 사업자 등록[1]

## ◆ 인증서 판매자의 자격

1.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필하여야 한다.
2. 발전차액을 받지 않아야 한다.
3. 인증된 모듈을 사용하여야 한다.[국내 인증만 인정]
4. 설비설치시 정부 무상지원금의 지원비율이 30%미만이어야 한다.
5. 설치의무화대상으로 설치된 설비가 아니어야 한다.
6. 공공기관이 설치한 태양광 설비가 아니어야 한다.
7. 연간 기준가격 적용 설비” 로 선정된 설비가 아니어야 한다  
[단 선정이 취소된 설비는 제외]

# 1. 사업자 등록(2)

## ◆ 다음 항목을 등록하여야 입찰 참여 가능

- 사업자명, 주소, 대표자 등 발전사업자에 관한 사항
- 발전소명, 용량, 소재지 등 발전소에 관한 사항
- 발전방식, 사용부품 등 발전소 구성에 관한 사항
- 공급인증서 판매의향 가격 및 판매의향기간에 관한 사항

## ◆ 등록된 정보는 센터 및 인증서 구매자에게 제공됨

※ 등록자가 등록한 관련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봄

## 2. 인증서 판매자 선정 의뢰

### ◆ 자체 인증서 판매자의 선정

- RPA기관은 등록된 발전소 중에서 자체 기준에 의하여 계약체결 가능
  - ※ 계약가격 및 기간은 양자간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
- RPA기관은 매매계약사실을 센터에 신고

### ◆ 인증서 판매자 선정 의뢰

- 의뢰기한 : 매년 3월 31일 까지(2009년은 지침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)
- 의뢰내용 : 발전용량 ( 발전량이 아님 )
- 용량변경 : 입찰공고 이전에 하여야 유효

### 3. 입찰공고

- ◆ **공고시기** : 인증서 판매자 선정의뢰 완료 후 30일 이내  
[ '09년 11월 30일 이내, '10년/'11년 : 4월 30일 이내 ]
- ◆ **공고방법** : 센터 홈페이지 게시
- ◆ **공고내용** : 총선정용량, 선정기준, 입찰기한 등

## 4. 입찰

- ◆ **입찰용량 : 발전사업허가용량 이하(절대 초과 불가)**
- ◆ **입찰자는 발전소 등록(사업자 등록)을 필 한 사업자에 한함**
- ◆ **하나의 발전사업허가에 대하여 하나의 입찰서만 제출**
  - **두 개 이상의 입찰서제출시는 모두 무효 처리**

# 5. 인증서 판매자 선정(1)

## 인증서 판매자 선정기준

구분	평가지표	세부내용 및 평가기준	배점
계량평가 (70점)	발전설비 용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30kW 이하 : 20점</li> <li>○ 30kW초과~200kW이하 : 18점</li> <li>○ 200kW초과~1MW이하 : 16점</li> <li>○ 1MW초과~3MW이하 : 14점</li> </ul>	20
	입찰가격	$[(\text{예정가격} - \text{입찰가격}) / \text{예정가격}] \times 20$ *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	20
	건설입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건축물 상부 또는 외벽 이용 : 20점</li> <li>○ 농지, 산지 이외의 부지 이용 : 18점</li> <li>○ 농지, 산지 이용 : 16점</li> </ul>	20
	사업진척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개시 신고를 필한 경우 : 10점</li> <li>○ 사용전검사를 필한 경우 : 9점</li> <li>○ 발전사업허가를 필한 경우 : 8점</li> </ul>	10
사업계획서 평가(30점)	산업발전 기여도 등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태양광 발전소의 건설이 국내 태양광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</li> <li>2. 태양광 발전소의 건설이 지역발전에 끼치는 영향</li> <li>3. 신속하고 지속적인 유지·보수 체계 구축 여부</li> </ol>	30
합 계			100

## 5. 인증서 판매자 선정(2)

- ◆ **예정가격 이하의 입찰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[인증서 판매자 선정기준]에 따라 평가**
- ◆ **예정가격 : 450원/kWh**
- ◆ **사업계획서 평가 : 센터, 산.학.연 전문가, 인증서구매자의 임직원 중 5인 이상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**
- ◆ **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로 순번을 정함.  
단 평가점수가 같은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 우선하여 순번을 정함**
  1. **건축물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경우**
  2. **입찰용량이 작은 경우**
  3. **입찰가격이 낮은 경우**

## 6. 인증서 판매자 배분

- ◆ 배분순서 : 선정의뢰용량이 많은 인증서 구매자부터 배분
  - 의뢰용량이 동일할 경우는  
한수원/남동/중부/서부/남부/동서의 순으로 배분
- ◆ 배분물량 : 인증서 구매의뢰 물량을 초과할 수 없음
  - 배분과정에서 구매자의 선정의뢰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다음 인증서 구매자에게 배분
  - 어느 인증서 구매자에게도 배분되지 못할 경우는 가장 많은 잔여용량이 남아있는 구매자에게 남은 용량만큼 배분  
=> 잔여용량만큼만 계약 가능
- ◆ 배분된 사업자는 계약전까지 판매자선정 포기 가능
  - 포기시에는 2년간 입찰참여 불가
  - 포기로 인하여 잔여물량이 생긴 경우 추가로 선정하여 배분(순번대로)



## 7. 인증서 매매 계약

- ◆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분된 인증서 판매자와 구매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
- ◆ 계약의 형식 및 내용은 자유이나 반드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
  - 매매용량, 매매금액(1kWh에 해당하는 인증서 단위), 계약기간, 예상되는 인증서 매매량
- ◆ 계약기간 : 사업개시일로부터 12년 이상
- ◆ 매매 계약시에는 센터 소장에게 신고(인증서 구매자)

## 8. 설비설치 및 확인(1)

### ■ 설비설치시 준수사항

- ◆ 설치기한 : 매매계약체결후 **6개월** 이내(사용전검사 완료)
- ◆ 설치용량
  - 선정된 용량(계약용량)의 **80% 이상 100% 이내**
- ◆ 기자재 사양
  - 입찰시 **제시한 모듈과 동일 모듈 사용**
  - 단, 부득이하게 다른 모델의 모듈을 사용시에는 **국내에서 제조한 모듈로 대체 가능**
- ◆ 운전조건
  - 연속하여 **1개월 이상 전력공급을 못할시에는 계약 취소**

## 8. 설비설치 및 확인(2)

### ■ 설치확인(발전사업자 => 센터 소장)

- ◆ 신청시기 : 사용전검사 완료후 10일 이내
- ◆ 설치확인기한 : 신청후 10일 이내
- ◆ 확인사항
  - 용량(모듈 정격 용량)
  - 발전차액 수령 여부
  - 인증된 모듈 사용 여부
  - 기타 인증서 판매자 의무준수 여부 등
- ◆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서면조사로 대체

## 9. 전력공급

### ◆ 전력공급계약

- 200kW 초과 : 전력시장(한국전력거래소)에서 거래
- 200kW 이하 :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계약(PPA) 체결 가능

### ◆ 소내소비전력우선사용

- 소내소비전력 : 발전소 운영과 직·간접적으로 연관된 시설에 필요한 전력(추적식 모터 등)
- 전력공급량 : 전력생산량-소내소비전력

※ 별도의 인입선으로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은 경우는 공급받은 전력량을 차감한 양을 공급량으로 산정

## 10. 인증서 발급 신청

- ◆ 신청시기 : 전력을 공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
  - ※ 매월 신청 원칙
  
- ◆ 발급기관
  - 한국전력공사와 PPA 사업자 : 센터 소장
  -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자 :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
  
- ◆ 신청시 서류
  - 신청서/전력공급증명 서류

# 11. 전력공급량 확인/인증서발급/대가지급

## ◆ 인증서 발급

- 신청서 접수후 **10일 이내**  
[단 전력공급실적의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는 최종 실적 확인후 10일 이내]

## ◆ 인증서의 귀속

- 특별한 매매 절차없이 인증서 구매자에게 귀속  
[절차 간소화]

## ◆ 인증서 발급 중단

- 인증서 매매 계약 해지시 즉시 인증서 발급 중단

## ◆ 대가지급 : 인증서 판매자와 구매자와의 계약사항에 따름

### III. 향후 일정



# 향후 일정(2009년)

- ◆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발급 및 매매에 관한 규정 시행  
[2009.10.01]
- ◆ RPA기관의 공급인증서 구매의뢰 완료  
[ ~ 2009년 10월말 ]
- ◆ 공급인증서 판매자 선정 입찰 공고  
[ ~ 2009년 11월말 ]
- ◆ 공급인증서 판매자 선정 및 배분  
[ ~ 2009년 12월말 ]
- ◆ 공급인증서 판매 계약, 설비설치, 인증서 판매  
[ 2010년중 ]



# 향후 일정(2010년)

- ◆ RPA기관의 공급인증서 구매의뢰 완료  
[ ~ 2010년 3월말 ]
- ◆ 공급인증서 판매자 선정 입찰 공고  
[ ~ 2010년 4월말 ]
- ◆ 공급인증서 판매자 선정 및 배분  
[ ~ 2010년 5월말 ]
- ◆ 공급인증서 판매 계약, 설비설치, 인증서 판매  
[ 2010년중 ]

엠블럼 이름 : **SeSe**



“Save energy, Save earth”

이 엠블럼은 지구온난화를 상징하는 펭귄을 캐릭터로 사용해  
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가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임을  
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했음

**감사합니다 !**